

‘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’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신청 안내

계약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본 신청은 부부공동명의 변경을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진행되며, LH전매동의서 발급 등 전매동의 심사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**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는 금회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**하므로 계약자 분들께서는 이점 유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또한,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완료하신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부부공동명의 변경 신청 일정 및 장소

구분	내용	비고
일정	26. 06. 12(금) ~ 26. 06. 13(토) 2일간, 10:00 ~ 17:00	
장소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3-6번지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	
사전 예약 및 문의	1899-2888	부부공동명의 변경 희망 세대 사전 예약 必

※ 배우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주택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부부공동명의 진행 절차 및 신청 시 구비서류

진행 순서	진행 절차 및 구비서류				
① (권선구청 방문)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	- 증여계약서 작성 : 홈페이지(https://brand.hldni.com/suwon-efete) 팝업 내 양식 및 작성요령 참조 - 증여계약서 검인 : 권선구청 종합민원실 부동산실거래 · 검인(8번창구) [문의 : 031-5191-6479] ※ 증여인, 수증인 2인 모두 방문 시, 각각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증여인 또는 수증인 중 1인 방문 시, 방문자의 신분증과 미방문자의 도장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② LH전매동의 신청 및 서류 제출	[유의사항] 반드시 권선구청에 먼저 방문하시어 상기 ①의 [증여계약서 검인] 절차를 완료 후 견본주택에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. - LH전매동의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: ‘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’ 견본주택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>증여인(계약자) 구비서류</th> <th>수증인(배우자) 구비서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- 아파트 공급계약서(일반조항, 발코니계약서 포함)원본 - 검인된 증여계약서 원본 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2부 ※ [부동산 매도용]으로 수증인(배우자) 인적사항 기재 ※ 본인발급분에 한하여,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불가 - 인감도장 - 신분증 - 주민등록표등본(전체 표기) 2부 -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2부 </td> <td> 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2부 ※ [일반용]으로 본인발급분에 한함 - 인감도장 - 신분증 - 주민등록표등본(전체 표기)2부 (분리세대인 경우) [1인(증여인) 방문 시 추가서류] - 수증인 인감증명서 추가 1부 ※ [일반용]으로 본인발급분에 한함 - 위임장(견본주택 비치)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※ 증여인의 경우 위임이 불가하며, 반드시 본인 방문 必 ※ 수증인의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시 위임 불가 ※ 상기 서류는 최초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,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 必 ※ LH 전매동의서 날인까지 약 3주 이상 소요(신청건수에 따라 늘어날 수 있음)	증여인(계약자) 구비서류	수증인(배우자) 구비서류	- 아파트 공급계약서(일반조항, 발코니계약서 포함)원본 - 검인된 증여계약서 원본 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2부 ※ [부동산 매도용]으로 수증인(배우자) 인적사항 기재 ※ 본인발급분에 한하여,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불가 - 인감도장 - 신분증 - 주민등록표등본(전체 표기) 2부 -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2부	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2부 ※ [일반용]으로 본인발급분에 한함 - 인감도장 - 신분증 - 주민등록표등본(전체 표기)2부 (분리세대인 경우) [1인(증여인) 방문 시 추가서류] - 수증인 인감증명서 추가 1부 ※ [일반용]으로 본인발급분에 한함 - 위임장(견본주택 비치)
증여인(계약자) 구비서류	수증인(배우자) 구비서류				
- 아파트 공급계약서(일반조항, 발코니계약서 포함)원본 - 검인된 증여계약서 원본 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2부 ※ [부동산 매도용]으로 수증인(배우자) 인적사항 기재 ※ 본인발급분에 한하여,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불가 - 인감도장 - 신분증 - 주민등록표등본(전체 표기) 2부 -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2부	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2부 ※ [일반용]으로 본인발급분에 한함 - 인감도장 - 신분증 - 주민등록표등본(전체 표기)2부 (분리세대인 경우) [1인(증여인) 방문 시 추가서류] - 수증인 인감증명서 추가 1부 ※ [일반용]으로 본인발급분에 한함 - 위임장(견본주택 비치)				
③ 부부공동명의 변경 신청 (LH전매동의 완료 후)	상기 ②의 LH전매동의 완료 시 개별안내(SMS 등) 예정 → ‘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’ 견본주택 내방 계약서 권리의무 승계란 및 신청 서류 작성 ※ 증여인의 경우 위임이 불가하며,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. ※ 수증인의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시 위임이 불가합니다.				
④ 계약서 수령	-계약서 권리의무승계확인 날인(시행수탁자겸 매도자, 시행위탁자, 시공사)완료시 수령일정 확정 후 개별 안내(SMS 등) 예정				
⑤ 증여 신고	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 신고 必 (증여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)				